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
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80호
- 나. 제 출 자 : 강수정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다. 구매비율 적용, 운행 지원, 충전시설 설치 운영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라. 홍보 등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11조의 2, 제11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4. 12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2) 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3조)

- 체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함

3) 구매비율 적용, 운행 지원, 충전시설 설치 운영(안 제4조 ~ 안 제6조)

- 안 제4조는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연간 70%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는 규정을 준용함.
- 안 제5조, 제6조는 운행에 따른 지원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함

4) 홍보 등(안 제7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편의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4. 3.] [법률 제16306호, 2019. 4. 2., 타법개정]

제10조의2(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7.]

제11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